TSLINES KOREA CO., LTD.

컨테이너 손상확인서

B/L No.	
Continaer No.	
반납일시	
반납장소	
화주명	
운송사명	
내품명	

상기 컨테이너는 당사 반납 당시 DAMAGE 상태로 반납 되었으며, 추후 이는 DAMAGE 비용 청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 **컨테이너 수리비 보상 책임자**(실제 수리비 부담 담당자 분의 정확한 연락처 빠짐없이 기재 바랍니다.)

회사명	
담당자(성함/직위)	
회사번호	
담당자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직인명판	(인)

<< 공 지 >>

법적청구 근거 : CONSIGNEE(수화인, 구매자)가 B/L을 인도 받는 시점에서 SHIPPER(송화인, 판매자)의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컨테이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 (즉 SHIPPER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도 벌률상 CONSIGNEE의 공동책임이며, 관련비용 지불 후, SHIPPER에 대한 클레임 손해배상 등으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수리비 면제 조건 : 선적지에서의 공컨테이너 수취부터 DAMAGE가 입증된 경우, 선적지에서 수리비 지불을 승인하여 당사와 확인이 된 경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손상 컨테이너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류를 본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TSLINES KOREA M&R TEAM